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342
----------	-----

제출년월일 : 2017.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개정내용 반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2조)

-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의해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선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안 제4~5조)

- 위원장(부군수)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의회 의원, 군민 등

라.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규정(안 제6조~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4.24. ~ 2017.5.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

개선전	개선후
<p>제4조(위원회의 구성)제4항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이 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등)제2항4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u>군수가</u>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조(위원회의 구성)제4항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u>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의 임기 등)제2항4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u>원활한 직무수행이</u>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u>을</u>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 신설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5) 법제심사 : 원안동의

6)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2조(위탁관리)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150